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연 철 흙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1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2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도유림의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(안 제6조)

라.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시행 및 도유림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호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7조 및 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 도유림의 체계적인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, 미래가치 창출, 공익가치 증진 등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관리를 위하여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산림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유림, 공유림, 사유림으로 구분되고 있으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산림을 관리하여야 함.

국가(산림청)가 관리주체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는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영 및 관리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공유림 중 도유림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- 또한, 상위법령에 준하여 도유림의 체계적인 경영 및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지속가능한 산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~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6조는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시행 및 도유림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호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 - 입법예고('20.10.29.~'20.11. 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 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